

199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2차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 부 경 위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4 .27 평창군수(재무과장)
- 나. 회 부 일 자 : 1999. 5. 28
- 다. 상 정 일 자 : 1999. 5. 28 제66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제2차본회의

2. 제 안 이 유

- 지방재정법 제77조,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
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199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2차
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
평창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지방재정법 제77조,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
작성지침 기준에 의거 작성된 1999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
2차변경계획안의 취득재산은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미탄
목욕탕부지 토지 1,394㎡와 건물신축 354㎡임.

4. 검 토 결 과
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

얻어야 할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대상은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와 토지의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금회 취득대상은 토지면적은 1,394제곱미터와 건물 4억원(시가표준액)이 되는 점을 판단할 때 지방의회 의결 대상이고

-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지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미탄목욕탕 부지와 건물신축에 해당되는 취득대상으로서 현재 제1회 추경에 목욕탕 부지매입비 65,518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,
- 관리계획상 부지매입비 추정금액은 28,577천원으로 되어있으나 예산계상 금액은 65,518만원으로서 차액27,000천원은공시지가 적용과 감정평가사 산출에 따른 차액인 것으로 나타났음.